

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용역명 : 상하초 식생활관 석면해체제거공사

측정기간 : 2022. 07. 27 [1일간]

주식회사 예은석면조사기관

《 목 차 》

【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】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80호서식]

【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】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81호서식]

【 별도 첨부 】

- 석면농도측정 분석결과서
- 석면농도측정 위치도
- 석면농도측정 사진대장

【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】

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	군 산 - 20220116
신고현장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상하초 식생활관 석면해체제거공사	전화번호 063-214-7904
	소재지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1길 36 식생활관	
신고인	석면해체·제거업자명(상호) (유)힘찬건설	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1556호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22년 07월 일

신고인(석면해체·제거업자)

(유)힘찬건설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업자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상하초 식생활관 석면해체제거공사	
	현장 소재지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1길 36 식생활관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 군 산 - 20220116	업자명(상호) (유)힘찬건설
	전화번호 063-214-7904	대표자 최윤서

2. 측정기간 - 2022년 07월 27일 (1일간)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최성찬	산업위생관리기사1급	20202141356M	측정자
장목화			분석자

4. 측정결과 [별도 첨부]
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 [별도 첨부]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2년 07월 일

주식회사 예은석면조사기관



석면해체·제거업자 (유)힘찬건설 대표님 귀하

석면농도측정 분석결과서

용역명	상하초 식생활관 석면해체제거공사		
의뢰자	(유)힘찬건설		
접수일자	2022. 07. 27.	분석일자	2022. 07. 27.

시료 분석결과

위상차현미경법(PCM, NIOSH NMAM #7400)

NO	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 (분)	유량 (ℓ/min)	측정농도 (개/cm ³)	초과여부
1	1-1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201	0.001	기준 미만
2	1-2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82	0.001	기준 미만
3	1-3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93	0.005	기준 미만
4	1-4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98	0.001	기준 미만
5	1-5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236	0.003	기준 미만
6	1-6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82	0.002	기준 미만
7	1-7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99	0.003	기준 미만
8	1-8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85	0.002	기준 미만
9	1-9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204	0.004	기준 미만
10	1-10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87	0.003	기준 미만
11	1-11	식생활관 1층 식당	100	10.151	0.001	기준 미만

※ 참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, 고용노동부 고시 『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13호)』 따라 채취된 시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.
- 분석결과는 개/cm³(채취된 섬유수/채취한 공기의 부피)로 표현되며, 초과여부 기준농도는 0.01개/cm³ (고용노동부)입니다.
- 시료는 별도의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 결과 통보 후 30일 후에 폐기처분 됩니다.
- 본 분석결과서는 본사의 허가없이 사용되거나 재발행 될 수 없습니다.

분 석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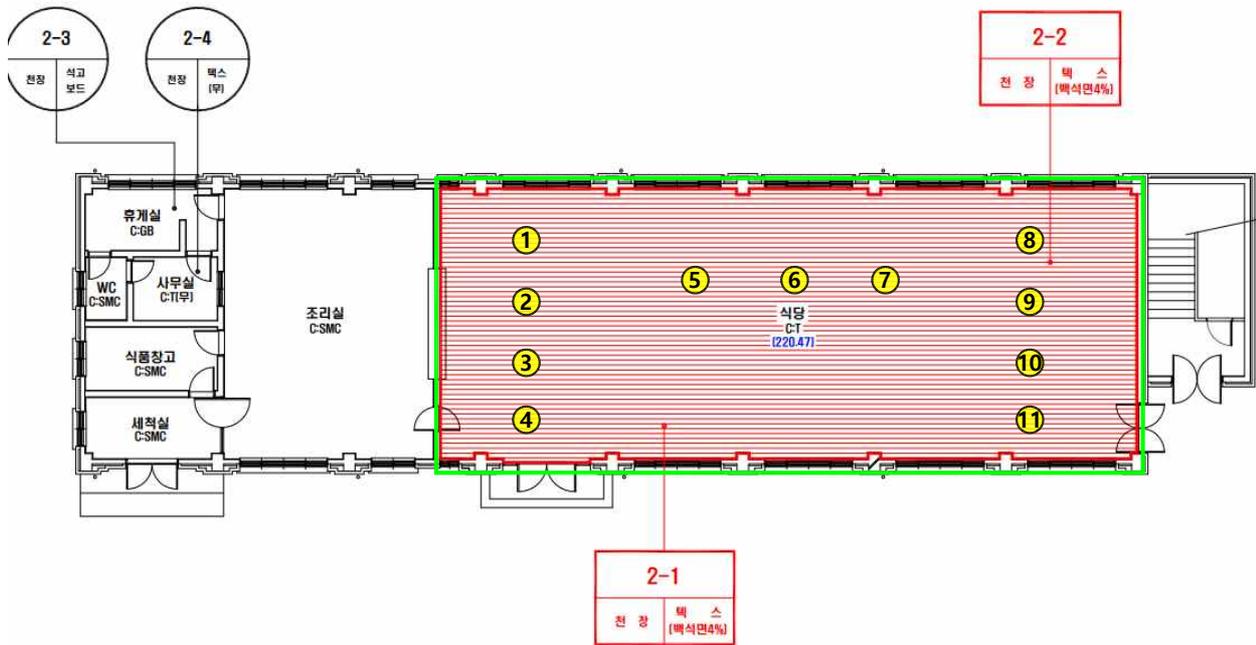
장 목 화

주식회사 예은석면조사기관



석면농도측정 위치도

석면함유 자재명	텍 스	석면자재 총면적	220.47m²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시료수

밀폐면적	최소 시료개수	밀폐면적	최소 시료개수
0 ~ 7.99	0	216 ~ 342.99	5
8 ~ 26.99	1	343 ~ 511.99	6
27 ~ 63.99	2	512 ~ 728.99	7
64 ~ 124.99	3	729 ~ 998.99	8
125 ~ 215.99	4	999 ~ 1300.99	9

- 고용노동부 고시 『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13호)』 제3장 10조에 따라 시료채취 수 산정 (계산식)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시료수 = 밀폐면적 (A, m²)^{1/3} -1 (소수점 이하 버림)
-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,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 (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,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)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

【 석면농도측정 사진대장 】

시료번호	1-1~11	
측정위치	식생활관 1층 식당	
석면해체 작업완료	음압기 가동	음압기 가동
		
석면농도 측정	석면농도 측정	석면농도 측정
		

연번	측정 전 점검 사항	점검 사진
1	석면자재 위치 별 완전 제거 여부	
2	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,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 존재 여부	
3	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는지 여부	
4	폐기물이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는지 여부	
5	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는지 여부	
6	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, 먼지가 침천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,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천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 시킨 후 시료채취 여부	

【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】

제2021-120008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주식회사에은석면조사기관	
소재지	(55342)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07	
대표자성명	최성찬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지역	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그 밖의 기타사항

※ "지정사항" 및 "준수사항"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1. 10. 20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